

선물신고 안내문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신고요령(절차)

선물받은 공직자	•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목록을 기관의 장에게 제출 (붙임1:선물수령신고서)
↓ (목록제출)	
소속기관·단체의 장 (감사담당관)	•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 인 경우 선물신고 토록 통보(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, 기관지체관리)
↓ (결과통보)	
선물받은 공직자	• 신고대상 선물(10만원 이상)은 즉시 신고
↓ (신 고)	
소속기관·단체의 장	•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
↓ (이 관)	
등록기관의 장	• 선물의 재이관, 처분 등 사후관리

선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가능

[붙임 1]

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2.8.23>

선물수령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신고인	성명	소속
	직위	직급 등

선물 내역

품명	규격	수량	증정인			수령일 및 장소	선물수령 경위
			국명	직위	성명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(외국정부·외국단체·외국인)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[] 외국정부
[] 외국단체
[] 외국인]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소속기관 · 단체장 귀하

작성방법

<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'직급 등' 란 작성방법>

-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-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

업무 처리절차

